

201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, 제15조,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4년 12월 2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

I.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- 가.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
- 나.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- 다. 경과년수별 잔가율
- 라. 가감산특례
- 마. 증·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- 바.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
- 사.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
2. 세부결정사항 : “2015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”와 같음.

- ※ 「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」는 북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.

II. 2015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가.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시설물, 부수시설물, 입목, 어업권, 광업권, 회원권, 지하자원 (용어)정의 등

나. 어업권 기준가격(북구)

(단위:천원)

어업의 종류		양식방법	양식물의 종류	'15년 기준가격
종별	유형별			
복합	수하식	연승식	우렁쉥이, 전복, 해조류	10,660
해조류	수하식	연승식		6,060
정치망	-	-		7,000

2. 세부결정사항 : “201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”와 같음.

※ “201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”는 북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